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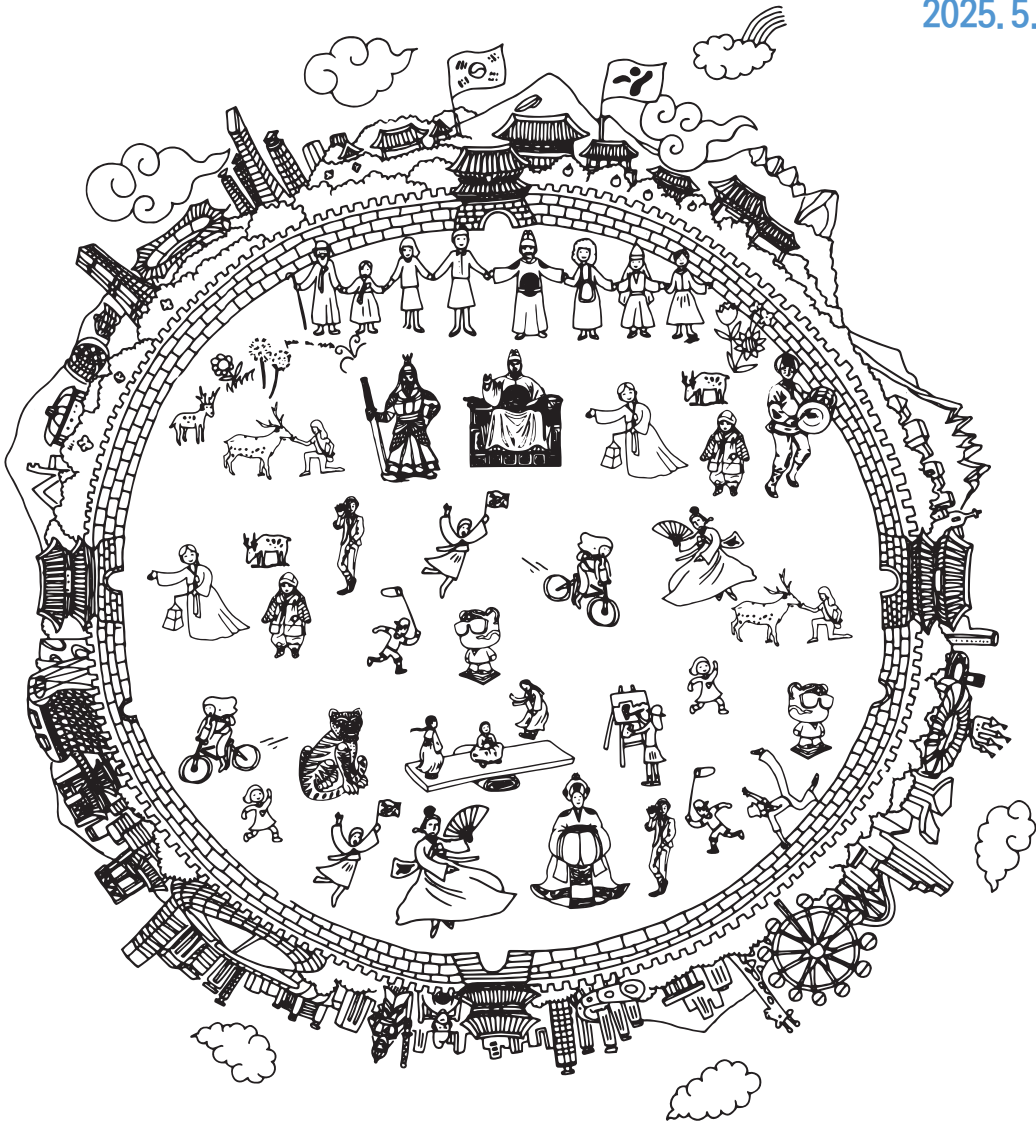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68호
2025. 5. 30.(금)



목 차

◆ 공 고

제2025-172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2
-----------------------------------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2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소관 실·본부·국
조례안 (2건)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3급)를 신설하여 시의회사무처 통솔범위를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 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함(안 제2조제2항)
- 다. 의정국장의 사무분장을 명시함(안 제2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5. 22. ~ 5.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유성근 (☎2133-663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산 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를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u>서울특 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를 둔다.</u> ② 사무처에 <u>사무처장과 그 밖 에 필요한 직원</u> 을 둔다. ③ (생략) <u><신설></u>	제2조(사무처) ① ----- ----- <u>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 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 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u> ② ----- <u>사무처 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 한 직원</u> -----. ③ (현행과 같음) ④ <u>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분장한다.</u> <u>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u>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u> <u>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 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 산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4. 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 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u>

제5조(시행규칙) <u>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u> <u>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u>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u> 제5조(시행규칙) <u>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u>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직위 신설과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유성근(02-2133-663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3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설치 및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교원 확보에 대응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정원 변동없이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2명
 - 의회사무처 3급 정원 +1명, 직속기관 교수 등 정원 +11명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 25.6.2.)에 따라 [별표 5] 중 '기술서기관' 을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개정
-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을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별표 2 (사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산·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25. 5. 22. ~ 5. 27.) 결과: 의견제출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520명” 을 “10,50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54명” 을 “565명”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표4” 를 “별표 4” 로 한다.

별표 4의 일반직 계란, 3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3급	27	16	1	1	9	
5급 이하 소계	10,193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65					
교수 등	487			487		

별표 5의 구분란 중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을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7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520명</u>	1. ----- ----- -----: <u>10,509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u>554명</u>	3. ----- -----: <u>565명</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u>별표4</u> 와 같다. 다만, 본청과 사업소간에 1급 일반직 임명에 따른 3급이상 일반직 정원은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 ----- ----- ----- <u>별표 4</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 ----- -----

현행							개정안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계 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계 행정기관
총계	11,730						총계	11,730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0,700						일반직계	10,689					
(생략)							(현행과 같음)						
3급	26	16		1	9		3급	27	16	1	1	9	
(생략)							(현행과 같음)						
5급 이하 소계	10,205						5급 이하 소계	10,193					
(생략)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계	554						교육공무원계	565					
(생략)							(생략)						
교수 등	476			476			교수 등	487			487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계 행정기관
소방공무원계	7,434					
(생략)						
소방정	32	3		29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1		
(생략)						

[별표 5] -----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계 행정기관
소방공무원계	7,434					
(현행과 같음)						
소방정	(현행과 같음)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1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시의회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 교수 정원의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
-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 소요인건비 추계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지출	○ 인력운영비	-32,191	-66,313	-68,303	-70,352	-72,463	-309,622
	○ 기타 운영비	206,714	413,428	413,428	413,428	413,428	1,860,426
	소계(a)						
수입	○						
	소계(b)						
□ 총 비용(a-b)		174,523	347,115	345,125	343,076	340,965	1,550,804

※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3.0%('25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7월(6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137	-6,205	-8,195	-10,244	-12,355	-39,136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176,660	353,320	353,320	353,320	353,320	1,589,940
합계		174,523	347,115	345,125	343,076	340,965	1,550,804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주무관(02-2133-672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변동없음

○ 일반직(관리운영직 외) △3

－ 3급 +1, 6급 △4

※ 6급 직렬 : 시설관리직

○ 관리운영직 △8

－ 7급 △4, 8급 △4

○ 교 원 +11

－ 조교수 +11

2. 비용소요 추계(1차년도 12개월 기준) : 349,04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합 계	349,046	◆ 총 계 : 349,046 [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64,382 ▷ 일반직 3급(+1) : $118,172 \times 1\text{명} = 118,172$ ▷ 일반직 6급(△4) : $81,153 \times \triangle 4\text{명} = -324,612$ ▷ 관리운영직 7급(△4) : $78,952 \times \triangle 4\text{명} = -315,808$ ▷ 관리운영직 8급(△4) : $69,778 \times \triangle 4\text{명} = -279,112$ ▷ 교원 조교수(+11) : $66,998 \times 11\text{명} = 736,978$ ※ 인력운영비 : 기본급, 수당 등 포함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기타 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413,428 ▷ 3급(+1) : $14,700 \times 1\text{명} = 14,700$ ▷ 교원 조교수(+11) : $36,248 \times 11\text{명} = 398,728$ ※ 기타 운영비 : 업무추진비, 직책급,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연구보조비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